

核非擴散과 原子力平和利用의 國際協力

遠 藤 哲 也

(제네바주재 일본정부대표부 대사)

1. 머 리 말

나는 과학자도 엔지니어도 아니다. 지난 10년간 원자력문제에 다소 관계해 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받은 전문교육은 법률이고 그후에도 주로 국제정치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초심자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고작 잘 말해서 「반전문가」라고나 할까.

그러나 초심자에게는 초심자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다. 즉 원자력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쉬운 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원자력문제의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대중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 놓인 나의 역할이 있는지도 모른다.

2. 원자력의 빛과 그늘 (“지킬박사”와 “하이드”)

원자력 만큼 이중인격적인 기술이 또 없는 것이 아닐런지. 현대의 과학기술은 크든 작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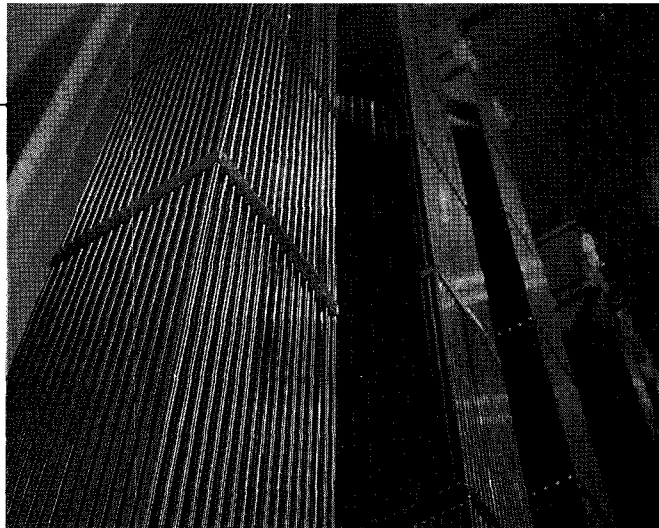
모두 빛의 부분과 그늘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다이내마이트는 토목공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포의 화약으로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는 거리를 단축해 세계를 좁히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매년 얼마나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가.

원자력은 군사적인 이용과 평화적인 이용면에서 기본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그 탄생과정이 불행했다. 제2차대전 말기에 무기로서의 개발이 급진전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비극을 가져 왔다.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도, 동위원소의 이용을 통한 공업, 농업, 의학에서의 기여도에서도 빛나는 빛의 일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들의 일면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말하자면 「原罪」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체르노빌사고는 이 원자력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일면을 크게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 원자력이 갖는 이중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빛의 부분을 넓히고 그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

3. 핵비확산

(1) 핵의 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NPT(핵비확산조약) 체제에 관해 -

작년 8월 20일부터 4주간 제네바에서 제4회 NPT재검토회의가 개최되어 필자도 여기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유감스럽게도 최종문안을 채택하지고 못한채 끝나고 말았지만 중요한 많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보아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핵비확산의 역사는 죽히 몇권의 책으로도 엮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요점만을 추려보기로 한다.

최초로 핵무기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당연히 무섭지만 장래성이 있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기술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사람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49년에는 소련이, 1952년에는 영국이, 1960년에는 프랑스가, 그리고 마침내 1964년에는 중국이 핵폭발실험에 성공해 핵무기보유국 대열에 끼었다. 일반적으로 경제후진국으로 알려져 왔던 중국의 핵폭발실험 성공은 당시 미소 양국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충격을 받은 미소 양국은 사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6번째의 핵무기보유국이 나타나 그 때에는 이미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해 핵무기보유국을 최소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에 한정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NPT가 시작된 동기로 1968년에 체결교섭이 타결돼 1970년에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이 꼭 20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성립된 NPT는 생각 보다 문서상으로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어 前文과 11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우선 첫째로 NPT는 가입국을 핵무기보유국과 비핵무기보유국으로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핵무기보유국이란 1967년 1월 1일까지 핵

폭발실험을 한 국가로 앞서 말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둘째로 비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평화 목적을 위해서도 핵폭발장치의 제조나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조약상에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檢證(verification)을 위해 비핵무기보유국은 모든 핵물질을 IAEA의 안전조치하에 두도록 요구 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원자력시설이 査察을 위해 공개되게 된다. NPT에의 가입 여부는 그 나라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일단 가입하면 상당히 주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는 핵무기보유국의 의무사항인데 비핵무기보유국의 핵무장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핵군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후자는 "best endeavor"라고 하는 노력조항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PT는 현상유지조약으로 불평등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NPT하에서는 핵무기보유국의 의무는 추상적, 나쁘게 말해 정신적인 것인데에 비해 비핵무기보유국쪽의 의무는 극히 명확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불평등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NPT는 핵비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NPT가 그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에 의해 핵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NPT는 핵비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예스」라고 할 수 있다. NPT는 확실히 능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후의 국제정치에서 핵비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NPT 가입국은 지금은 141개국에 이르고 있다. UN 가입국이 모두 159개국이니까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카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군비관리조약으로서 가장 범세계적인 것이 되어있다.

둘째, NPT성립 이후 20년간 공공연한 핵무장국은 한나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NPT의 무엇 보다도 큰 성과다.

NPT 미가입국중에는 핵무장에 대해 의심이 가는 나라도 있고, NPT 가입국중에서도 핵무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100% 확실하다는 증거는 다행히도 없다.

셋째, NPT하에서의 비핵무기보유국의 의무인 안전조치가 원자력 평화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NPT가 성립한 후 원자력선진국이면서 비핵무기보유국인 당시의 서독, 일본이 인준을 꺼린 이유중의 하나가 안전조치와 사찰에 의해 상업적인 원자력활동이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사찰은 받는 쪽에서 보면 비용도 발생하고 마음 편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 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넷째, 핵무기보유국 5개국 쪽도 민간(civilian)의 원자력시설을 IAEA의 안전조치에 맡긴다고 하는 이른바 voluntary submission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발적인 조치는 아직 한정된 것이지만 그래도 안전조치의 아픔을 나눈다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로 조약의 불평등성의 해소를 위해 일보 전진한 것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프랑스의 NPT,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비확산체제라고 하는 쪽이 나올 지도 모르지만 이에 대한 태도가 최근에 훨씬

前向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프랑스 양국 모두 NPT 가입국은 아니지만 핵비확산 자체에는 동조하고 있어 원자력 수출정책 같은 것도 NPT 가입국의 것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 되어있다. 제4회 NPT 再檢討 회의에서는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전진해서 정식으로 가입해 준다면 NPT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3) NPT의 문제점

그러나 NPT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몇가지 문제점이 작년의 재검토회의에서도 거론되었고, 1995년의 NPT 延長회의가 가까워옴에 따라 더 한층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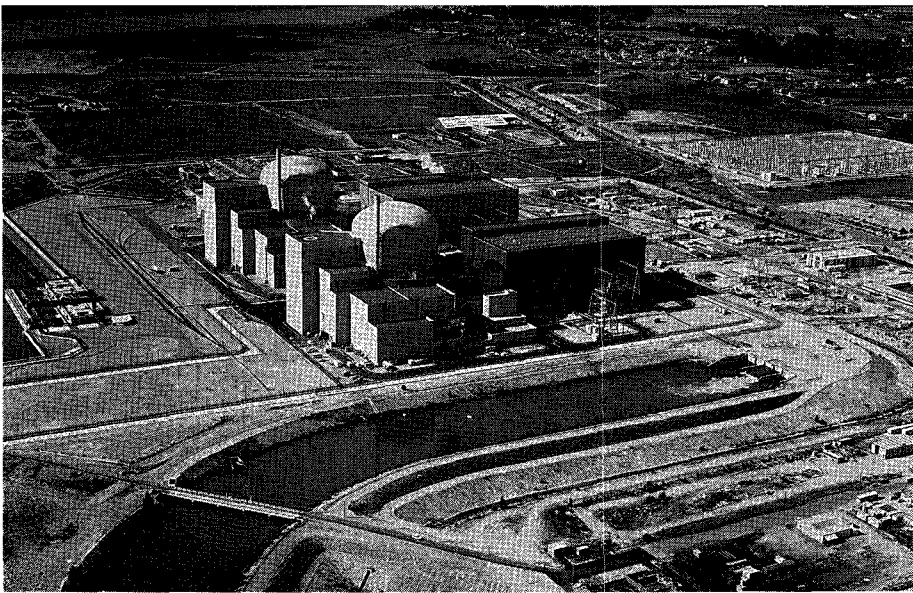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중 몇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핵무기보유국측의 NPT하에서의 의무인 핵군축이 충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특히 미가입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비핵무기보유국측은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공평치 못하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미소간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INF조약의 체결, START 협상의 진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핵군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가입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빨리 그리고 미소 양국간만의 협상이 아닌 UN이라던가 제네바의 군축회의와 같은 전체를 포함한 다수국가간의 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군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미가입국측은 강력하게 제의하고 있다.

둘째, NPT 가입국의 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아 핵무기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나라들, 즉 threshold country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시아지역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이 이에 해당된다. 이 점이 NPT로서는 큰 결함이다.

셋째, NPT에는 가입했지만 NPT의 의무조



항인 IAEA와의 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이래서는 NPT에 가입했다고 해도 전혀 유명무실하게 된다. NPT에 의하면 가입국은 18개월내에 IAEA와 협정을 맺고 모든 원자력시설을 안전조치하에 둘 것을 약속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고 지극히 간단명료한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北韓은 NPT 가입후 1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으로 부터의 핵 위협을 구실로 안전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필자가 의장으로 있었던 지난 1년간 IAEA 이사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해결될 전망이 없다. NPT에는 가입국에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은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IAEA의 안전조치는 NPT 가입국이 IAEA에 제시한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가입국이 예를 들어 산속에서 몰래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에 착수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있다. IAEA는 세계의 경찰관은 아니어서 마음대로 수상쩍은 시설에 들어가서 임검한다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여기에 NPT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필자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NPT 가입은 비핵무기보유국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핵비확산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대의명분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NPT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자력의 평화이용이라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동서냉전구조의 변화를 받아 미소의 평화관리능력은 점점 낮아져 지역분쟁의 위험성이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핵무기개발이 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역분쟁에서 핵이 사용되고 또는 핵 위협을 시위할 위험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NPT의 강화책

그러면 어떻게 핵비확산체제와 그 핵심인 NPT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NPT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즉, 하나는 NPT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성 보다 나은 매력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threshold country들의 가입을 포함해 한층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군축을 더욱 촉진시키고 특히 핵실험 전면금지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핵실험의 전면금지 서방국들에게는 핵전략

상 즉각 이에 응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한발한발 전진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외에 NPT 가입국이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원자력 평화이용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 즉 국제협력이나 기술이전에서 preferential treatment(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IAEA의 안전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IAEA의 안전조치는 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원자력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시설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원도 경비도 늘어나게 되고 현대적인 사찰기기도 필요해짐으로써 현재의 IAEA의 동결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핵비확산을 위해 NPT-IAEA의 안전조치가 필요불가결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감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NPT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235 같은 핵물질 뿐이기 때문이다. 또 NPT에 가입했어도 몰래 IAEA의 눈을 피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려는 나라가 全無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뜻에서 기밀에 속하는 원자력기자재의 수출을 NPT 가입국으로 full scope(전면적인)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한정하는 것이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공급국에 대한 London Guideline이나 “잔거”위원회 수출규제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기술이전의 제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정말 기밀에 속하는 것에 국한돼야 할 것이다. 또 자주 리스트를 재검토해 핵비확산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가급적 적은 품목에 대해 더 높은 장벽을 쌓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비확산문제에 대한 나의 설명을 마치는데 있어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즉,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원자력이

잔학하기 짝이 없는 공포의 무기형태로 먼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하이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원자력에너지가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평화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해도 원자력이 안고 있는 이 「원죄」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들은 항상 이 「원죄」앞에 겸허한 자세로 신중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핵무기보유국은 자신들의 특권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비핵무기보유국의 소리에 성실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비핵무기보유국측은 적절한 안전조치의 적용이 평화적 이용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그 전제조건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이것은 원자력의 빛 부분, 즉 “지킬박사” 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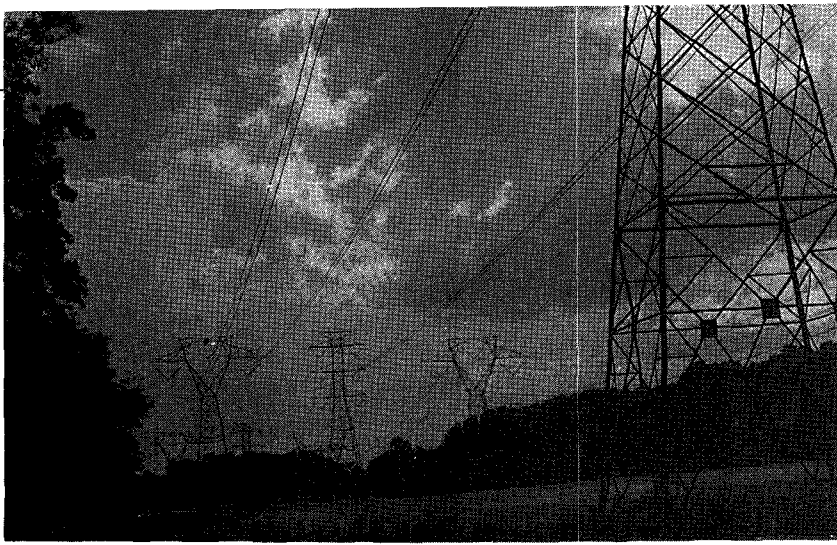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극히 많은 분야가 있다. 그 하나로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의한 發電이 있다. 원자력발전에는 우라늄을 연소시키는 것 부터 플루토늄을 연료로 하는 高速增殖爐가 있고 또한 21세기의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核融合이 있다.

그 다음으로 동위원소, 방사선의 의학, 공업, 농업, 식품 등에서의 이용이 있다. 또 그 중간 단계로 研究爐의 이용이 있다. 즉, 연구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동시에 동위원소 제조도 할 수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비확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NPT와의 관계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둘째로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는 안전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면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자력발전분야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동위원소, 방사선 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로 핵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오해가 생기기 쉬운 일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이것은 누구나가 정서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의 일 사고가 났을 경우의 손해배상체제다. 원자력사고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장치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비로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나라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협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제협력, 지역협력, 다국간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는 협력대상 분야의 특성, 필요한 비용, 지역특성 등에 의해 2국간 협력 적합한 것, 지역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것, 이는 IAEA와 같은 다국간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손해배상체제 정비 등은 전세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크게는 다국간 협력에 맡기고, 필요하면 세부적인 면은 2국간 협력이나 지역간 협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

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분야에서 IAEA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타당한 것이다.

동위원소·방사선의 이용은 물론 다국간 협력에 의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IAEA, FAO(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IAEA의 경우에는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은 IAEA의 3가지 역할, 즉 안전조치, 원자력 안전과 더불어 한가지 역할이 되어있고 2국간 협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특히 지역간 협력에 아주 접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발전단계도 비교적 비슷해 필요성의 면에서는 공통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쌀의 돌연변이種의 재배(mutation breeding), 천연고무 latex의 방사선 硬化처리(radiation vulc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체체파리(tsetse fly)대책이나 나사선충(new world screw worm) 대책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원자력發電은 일반적으로 말해 2국간 협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협력을 가장 적절하게 배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

원자력발전은 뭐니해도 현재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의 중심과제다. 에너지자원으로서도 또 지구온난화현상의 원흉인 CO₂와 무관하다는 지구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사고후 여론의 저항이 거세지고 또 핵확산의 관점에서는 모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지만 안전과 핵확산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장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system engineering의 정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기반이 불가결하고 건설을 위해서도 또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우수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필요로 한다.

아시아국가중에는 한국, 인도, 대만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發電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제1호 원자력발전소인 秦山-1호기는 1991년에 입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大亞灣의 2,3호기 건설도 시작되었다. 또 인도네시아도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외의 아시아국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화석연료는 결국 고갈될 것이고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은 계획부터 건설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제 서서히 그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할 단계가 된 것 같이 느껴진다.

원자력발전분야에서의 협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금조달, 타당성조사, 건설, 안전면에서의 협력, 인재양성 협력 등 아시아에서의 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전단계로서의 연구분야의 협력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강력히 요청된다.

(4) RCA 협력

RCA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는 IAEA산하에 있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원자력분야의 지역협력의 표본으로 그 업적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RCA가 계기가 되어 1984년에 중남미에 ARCAL가, 1990년 아프리카지역에 AFRA가 성립되었다.

RCA는 1972년에 성립되었는데 그 가입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호주,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동위원소·방사선의 이용을 중심으로 인재양성(training과 fellowship), 전문가 파견(expert services) 및 기계제공에 의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R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최근의 심한 재정난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협력대상분야를 현재의 동위원소 이용에서 연구로 이용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2가지 문제다. 특히 연구로는 앞서 말한 대로 원자력發電의 예비단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RCA 가입국에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NPT 미가입국이 들어와 있어서 핵비확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골치꺼리로 되어 있다.

5. 結 言

이상 필자는 핵비확산문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해 「반전문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개진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핵비확산은 세계평화를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 ②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번영을 위해 촉진돼야 한다는 것, ③ 또한 이 2가지는 원자력이 갖는 현저한 이중성격 때문에 표리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 ④ 여기에 추가해 앞서 말한 2가지 면에서의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는 4가지 점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IAEA의 일원으로 이러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국민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는 모두 다 함께 원자력의 빛의 부분을 넓히고 그늘 부분을 줄여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